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28

발의연월일: 2022. 3. 31.

발 의 자:이달곤·강민국·김학용

김영식 · 홍문표 · 권명호

이 용・구자근・박완수

김태호 · 김상훈 · 박대출

박대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기로하였음.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및 3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4(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 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 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 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 하 같다-----•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 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 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 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및 관리 지원
-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 구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
 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 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신 설>